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1조(목적) 이 영은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융회사의 범위)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2.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3.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4.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5.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및 중앙회
6.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 및 중앙회
7.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및 중앙회
8.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중앙회

제3조(중요지표의 지정 및 해제) 금융위원회는 법 제4조에 따른 중요지표의 지정 또는 해제 여부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해서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조(중요지표산출기관의 지정) ① 금융위원회는 중요지표산출기관 지정을 위해 법 제5조제2항제4호에 따라 산출업무규정을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

받은 기관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1. 상호
2. 본점의 소재지
3. 임원에 관한 사항
4. 자본금 등 재무에 관한 사항
5. 인력·시설 및 설비 등에 관한 사항
6.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
7. 중요지표의 산출 방법 및 공시에 관한 사항
8. 산출업무 수행과정에서 이해상충관리 및 내부통제장치에 관한 사항
9. 기초자료제출기관의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10. 중요지표 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지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서류 제출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2. 본점의 주소를 기재한 서류
3. 임원의 이력서와 경력증명서
4.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받은 산출업무규정
5.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설립 중인 법인은 제외하되, 설립일로부터 3개 사업연도가 지나지 아니한 법인의 경우 설립일로부터 최근 사업연도까지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를 말한다)

6. 신청일 현재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7. 그 밖에 지정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요지표산출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산출업무규정) ① 법 제5조제2항제4호에 따른 산출업무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요지표의 산출 방법 및 절차

가. 중요지표 및 중요지표가 측정하고자 하는 대상에 대한 정의 및 설명

나. 중요지표의 단위

다. 중요지표를 결정하기 위해 기초자료를 선정하는 기준

라. 기초자료의 유형, 형식, 우선순위, 제출주기 및 계산방법 등 산출 방법

마. 중요지표 산출과정에서 재량적 판단으로 업무를 처리해야할 경우 처리 기준 및 절차

바. 중요지표의 공시 주기 및 방법

사. 오류 발견 및 시정 절차

아. 중요지표 산출관련 중대한 업무변경 시 처리 절차

자. 중요지표 산출업무 중단에 대비한 비상계획

차. 중요지표 산출업무를 위탁한 경우 관련 사항

카. 중요지표 산출의 잠재적인 한계

타. 중요지표의 대표성 유지를 위해 산출 방법이 주기적으로 바뀌어야 하는 경우 변경 필요성 및 변경 주기에 대한 근거

파. 그 밖에 중요지표의 산출 방법 및 절차에서 정하여야 할 세부적인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중요지표 설명서

가. 중요지표의 정의, 측정 대상 및 용도

나. 기초자료에 대한 설명

다. 중요지표 산출·검증 및 승인 절차

라. 오류처리 절차

마. 비상산출 대책

바. 중요지표 설명서 제·개정일

사. 산출 방법의 중대한 변경, 산출 중지·중단이 초래할 수 있는 상황과 이로 인해 금융상품 계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안내

자. 그 밖에 중요지표 설명서에서 정하여야 할 세부적인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3. 이해상충관리 및 내부통제장치

가. 조직구조 및 산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업무분장

나. 임직원이 중요지표 산출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

다. 중요지표 산출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이해상충 상황을 판단, 관리 및 예방하기 위한 방법 또는 절차

라. 내부통제와 관련하여 지표관리위원회, 임원 및 감사 또는 감독조직이 수행하여야 하는 역할

마. 내부통제와 관련하여 이를 수행하는 전문성을 갖춘 인력과 지원조직

바. 내부통제장치의 주기적 점검 또는 변경 절차

사. 감사·감독조직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아.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방법과 내부통제 기준을 위반한 임직원에 대한 조치 방안

자. 임직원의 내부규정 위반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

차. 금융거래지표 왜곡 또는 조작 등과 관련한 내부고발 처리 방안

카. 지표산출 과정에서 재량적 판단을 사용하는 경우 이와 관련된 기준

타. 왜곡·조작 또는 오류 등이 의심되는 기초자료를 검증하기 위한 사전·사후적인 방법

파. 중요지표 산출 및 변경 관련 공시 및 의견수렴 절차

하. 산출업무 담당 직원의 보수 관련 사항

거. 그 밖에 이해상충관리 및 내부통제장치의 운영에서 정하여야 할 세부적인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4. 기초자료제출기관이 준수해야할 기준·절차 및 기초자료제출업무 관리 · 감독

가. 기초자료제출기관의 요건

나. 기초자료의 설명

다. 기초자료의 보관 및 제공 절차

라. 제출업무 담당자의 자격, 역할, 책임 및 교육

마. 제출업무 수행 관련 내부통제장치

바. 중요지표산출기관이 기초자료 제출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사. 기초자료 제출과정에서 재량적 판단으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관련

내용

- 아. 왜곡·조작 또는 오류 등이 의심되는 기초자료 발견 시 내부보고 절차
 - 자. 이해상충 관리에 관한 사항
 - 차. 기초자료제출기관의 자료제출 업무의 점검·검사에 관한 사항
 - 카. 기초자료제출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의 주기 및 방법
 - 타. 기초자료제출기관의 의무 위반시 중요지표산출기관이 취하여야할 조치
 - 파. 그 밖에 기초자료제출기관이 준수해야할 기준·절차 및 관리·감독에서 정하여야 할 세부적인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5. 산출업무의 위탁시 준수해야할 업무처리 방법 및 절차
- 가. 수탁자의 상호·명칭, 위탁업무·범위 등 위탁관련 정보
 - 나. 수탁자가 업무처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위탁자에 대한 보고
 - 다. 수탁자가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법령을 준수하기 위해 지켜야 할 행위준칙
 - 라. 수탁자의 행위준칙의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 방법
 - 마. 업무위탁에 따라 발생 가능한 위험에 대한 평가
 - 바. 위탁한 업무의 처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해지는 경우 중요지표 산출기관이 취하여야 할 조치에 관한 사항
 - 사. 그 밖에 산출업무의 위탁시 준수해야할 업무처리 방법 및 절차에서 정하여야 할 세부적인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항

② 법 제5조제2항제4호가목의 중요지표 설명서는 중요지표 산정방법의 결정 등 중요사항에 대한 변동이 있는 경우 신속하게 개정하여 변동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출업무규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중요지표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선임) ① 중요지표 관리위원회는 중요지표의 산출과 관련하여 이해상충이 없는 2인 이상의 외부 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② 지표관리 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요지표산출기관의 장이 아닌 자이면서 중요지표의 산출업무를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임직원이 아닌 자로 한다.

③ 중요지표 관리위원회는 중요지표의 타당성과 신뢰성 확보에 필요한 전문성과 지식을 갖춘 자로 구성한다.

④ 중요지표 관리위원회 위원의 과반수 이상은 이해상충이 없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중요지표산출기관의 장을 포함하여 중요지표 산출과 직접적으로 관계된 위원은 의결권을 가지지 못한다.

⑥ 그 밖에 중요지표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선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요지표산출기관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7조(중요지표 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중요지표관리위원회 위원의 해임·선임기준 및 절차

2. 산출업무규정의 적정성 주기적 점검
3. 산출업무규정 준수여부 점검(독립적인 기관 또는 전문가를 통한 점검을 포함한다), 공시 및 위반시 조치 사항
4. 산출과정에서 재량적 판단의 적정성
5. 이해상충관리 전반의 적정성
6. 산출업무의 위탁
7. 산출업무의 중단 결정에 관한 사항
8. 법률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금융위원회 신고 대상 의무
9. 그 밖에 중요지표의 신뢰성·타당성 확보를 위한 관리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8조(산출업무규정 및 이해상충 공시) ① 법 제6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중요지표의 산출 방법·절차 및 중요지표 설명서
2. 기초자료제출기관이 준수하여야 할 기준·절차와 제출업무에 대한 관리·감독 방법
3. 중요지표 산출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과 관련된 업무처리 방법 및 절차
4. 중요지표 산출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이해상충 상황을 판단, 관리 및 예방하기 위한 방법 또는 절차

② 중요지표산출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시하여야 한다.

제9조(산출업무규정의 적정성 검토) 법 제6조제4항 본문에 따라 산출업무규

정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출 방법의 내부 검토 및 승인관련 규정·절차
2. 중요지표산출기관의 내부 검토 및 승인을 담당하는 조직
3. 산출 방법을 검토 및 승인하는 담당자의 역할
4. 내부 검토가 필요한 상황 및 산출방법의 검증과 관련된 규정
5. 산출 방법을 검토·승인하는 담당자의 선임·해임과 관련된 절차

제10조(산출업무규정 준수여부 점검) ① 법제6조5항 본문에서 "이행상충 가능성이 높은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중요지표산출기관 또는 기초자료제출기관이 해당 중요지표와 관련된 금융계약을 체결하거나 금융상품을 보유하는 경우
2.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② 법 제6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독립적인 기관 또는 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인회계사 또는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
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나목에 따른 감사반
3. 변호사 또는 「변호사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법률사무소 및 동법 제57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제11조(자료의 기록·관리) 법 제6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초자료제출기관이 보관하여야 할 자료가.
가. 중요지표산출기관에 제출한 자료 및 근거자료

나. 기초자료 제출 담당자의 인적사항과 자격 및 역할

다. 기초자료 제출 과정에서 재량적 판단이 반영된 경우 그 내용

라. 기초자료 확인 기록

2. 중요지표산출기관이 보관하여야 할 자료

가. 기초자료 등 중요지표 산출에 이용된 자료

나. 중요지표 산출 담당자의 인적사항과 자격 및 역할

다. 중요지표 산출 결과

라. 중요지표 산출과정에서 재량적 판단이 반영된 경우 그 내용

마. 비상계획에 따른 조치내역

3. 중요지표 사용기관이 보관하여야할 자료

가. 중요지표를 사용한 금융거래 통계

나. 법제9조제1항에 따른 중요지표설명서와 교부 실적

다. 법제9조제2항에 따른 비상계획이 반영된 금융계약

제12조(중요지표 산출업무의 중단) 법 제7조제3항제3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중요지표 사용기관에 대한 중단사항 통지 및 사후 대응조치

2. 그 밖에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조치

제13조(중요지표의 사용) ① 법 제9조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거래와 관련된 금융계약을 말한다.

1. 「은행법」 또는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예금 및 대출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상품
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시설대여, 연불판매, 할부금융
5.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
6.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상품

② 법 제9조제2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대체할 금융거래지표, 선택근거 및 전환방식
2. 대체지표 전환절차 및 일정
3. 금융계약 상대방에 대한 변경사실 안내
4. 그 밖에 금융지표 산출 중단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14조(조치명령권) 법 제1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중요지표의 타당성 또는 신뢰성 제고를 위한 중요지표 산출업무규정 유지 또는 개선에 관한 사항
2. 기초자료 제출 또는 중요지표 산출 담당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3. 중요지표 산출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
4. 기초자료제출기관이 준수하여야 할 기준·절차 및 제출업무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제15조(외국 산출기관에 대한 특례)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기 위해 제출하는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

다.

1. 상호, 소재지

2. 중요지표가 이 법과 동등하거나 유사한 본국의 법령에 의해 감독을 받고 있는 것에 관한 사항

3. 본국의 감독당국 또는 해당 기관·단체 등을 통하여 중요지표 산출업무 감독에 필요한 자료 제출의 가능성에 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중요지표가 이 법과 동등하거나 유사한 본국의 법령에 의해 감독받고 있을 것을 증명하는 서류

2. 중요지표에 대한 본국의 제재 등 감독에 관해 금융위원회에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본국의 감독당국과 관련 자료교환을 위한 협정 등이 체결된 경우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16조(권한의 위탁) ① 법 제17조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1.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중요지표산출기관 지정요건을 갖추었는지 심사

2. 법 제5조제2항제4호에 따른 산출업무규정의 적정성 심사

3.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외국 산출기관 신고의 접수 및 지정요건을 갖추었는지 심사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결과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법 제17조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다음 각 호의 업무와 권한을 한국은

행에 위탁한다.

1.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중요지표산출기관 지정요건을 갖추었는지 심사
2. 법 제5조제2항제4호에 따른 산출업무규정의 적정성 심사
3. 법 제7조에 따른 중요지표 산출업무 중단에 관한 신고 수리 접수 및 조치
4. 법 제8조에 따른 기초자료제출기관의 제출업무 중단에 관한 신고 수리 및 조치
5. 법 제11조에 따른 조치 명령
6. 법 제12조에 따른 감독·검사
7.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외국 산출기관 신고의 접수 및 지정요건을 갖추었는지 심사

④ 제3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한국은행은 위탁업무처리기준을 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한국은행은 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결과를 기획재정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업무의 검사)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기초자료제출기관등의 업무를 검사를 하는 경우 검사기준을 만들어 사전에 기초자료제출기관등에 통보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그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기초자료제출기관등의 업무를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18조(과징금의 부과기준)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12조제2항제6호에 따라 업무정지를 명하거나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업무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③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의 기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업무정지의 총기간은 6개월을, 과징금의 총액은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금융위원회가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적은 서면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의견제출) ① 금융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은 금융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③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은 제2항에 따른 의견 진술 등을 하는 경우 변호인의 도움을 받거나 그를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21조(이의신청) ① 제19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이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 단서에 따라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한 자에게 결정기간이 연장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① 금융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 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과징금납부기한의 연장을 받거나 분할납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10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장되거나 분할납부가 허용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결정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1. 분할납부 결정된 과징금을 그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담보의 변경, 그 밖에 담보보전에 필요한 금융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을 받는 등 과징금의 전부 또는 나머지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납부기한의 연장, 분할납부 또는 담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3조(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① 금융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한 기간 이내에 과징금 및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체납된 과징금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문서로서 해당 세무관서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 및 가산금의 징수 또는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금융위원회 의결서
2. 세입징수결의서 및 고지서
3. 납부독촉장

⑤ 국세청장은 제4항에 따라 체납처분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가 끝난 경우: 그 업무의 종료 일시, 그 밖에 필요한 사항
2. 금융위원회로부터 진행상황에 대한 통보요청이 있는 경우: 그 진행상황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외에 과징금 또는 가산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4조(과오납금의 환급 및 환급가산금) ① 금융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이의신청의 재결 또는 법원의 판결 등의 사유로 과징금 과오납금의 환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급하여야 하며, 과징금납부의무자의 청구가 없는 경우에도 금융위원회가 확인한 과오납금은 환급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급하는 경우 환급받을 자가 금융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하는 다른 과징금이 있으면 환급하는 금액을 그 과징금에 충당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납부한 날부터 환급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가산금 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환급가산금을 환급받을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5조(결손처분) 금융위원회는 과징금 납부의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2. 징수금 등의 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체납자의 행방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
4.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 비용에 충당하면 남을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5.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이 징수금 등보다 우선하는 국세, 지방세, 전세권·질권·저당권 및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권 등의 변제에 충당하면 남을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6. 그 밖에 징수할 가망이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유에 해당
하는 경우

부 칙

이 영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8조제1항 관련)

1. 과징금의 산정기준

가. 기본과징금의 산정

- 1) 기본과징금은 법 제13조제1항에서 정한 과징금 금액의 상한에 2)에 따른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2) 부과기준율은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에 따라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를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구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나. 기본과징금의 조정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부과기준율 산정 단계에서 고려된 세부 참작사항은 제외한다), 위반행위에 대한 검사의 협조 여부, 위반상태의 해소나 위반행위의 예방을 위한 노력,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가목에 따라 산정한 기본과징금 금액을 감경하거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13조제1항에서 정한 과징금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다. 부과과징금의 결정

- 1) 금융위원회는 위반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등 특별한 사정, 금융시장 또는 경제여건,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배상 정도,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를 고려할 때, 나목에 따라 조정한 과징금 금액이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감액하여 부과과징금으로 정할 수 있다.
- 2) 금융위원회는 위반자의 지급불능·지급정지 또는 자본잠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반자가 객관적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오인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과징금 외에 실효성 있는 다른 조치를 이미 받은 경우,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나목에 따라 조정한 과징금 금액이 소액인 경우,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다.

2. 세부기준

부과기준율 등 기본과징금의 산정, 기본과징금의 조정, 부과과징금의 결정, 그 밖에 과징금의 부과 등에 필요한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위반행위별 업무정지의 기간 및 업무정지 같은 과징금의 금액(제18조제2항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업무정지 기간	과징금 금액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중요지표산출기관 지정 을 받은 경우	제13조제2항	6개월	1억원
2. 법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요지표 관리위원회를 두지 않은 경우	제13조제2항	3개월	5천만원
3. 법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출업무 관련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유지하 지 않은 경우	제13조제2항	1개월	2천만원
4. 법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산출업무 규정의 내용 및 이해상충관리에 관한 사항의 공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	제13조제2항	1개월	2천만원
5. 법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산출업무 규정의 적정성을 검토하지 않은 경우	제13조제2항	3개월	5천만원
6. 법 제6조제5항을 위반하여 산출업무 규정 준수 여부의 점검 및 결과 공시 를 하지 않거나 위반 사항에 대한 조 치를 하지 않은 경우	제13조제2항	3개월	5천만원
7. 법 제6조제6항 전단을 위반하여 금 융위원회의 승인 없이 산출업무규정의 중요 사항을 개정하거나 같은 항 후단 을 위반하여 중요지표 산출 방법·절 차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미리 공시하 고 의견을 듣지 않은 경우	제13조제2항	3개월	5천만원
8. 법 제6조제7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기록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은 경우	제13조제2항	1개월	2천만원
9. 법 제7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산 출업무 중단 신고를 하지 않거나 같은 항 후단을 위반하여 산출업무의 중단 에 관한 사항을 미리 공시하고 의견을 듣지 않은 경우	제13조제2항	3개월	5천만원
10. 법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산출업 무 중단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제13조제2항	6개월	1억원
11. 법 제7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13조제2항	6개월	1억원
12.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 하여 제출업무 중단 신고를 하지 않	제13조제2항	6개월	1억원

은 경우			
13. 법 제8조제3항 각 호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13조제2항	6개월	1억원
14.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요지표 설명서를 내주지 않거나 설명하지 않은 경우	제13조제2항	1개월	2천만원
15. 법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비상계획을 마련하지 않거나 해당 비상계획을 금융 계약 내용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 및 비상계획이 반영된 계약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제13조제2항	1개월	2천만원
16. 법 제11조 각 호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13조제2항	3개월	5천만원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연 락 처	(02) 2100 - 2852